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 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도하석 의원 등 9명
- 발의일자: 2023. 11. 3.(금)
- 회부일자: 2023. 11. 3.(금)
- 검토기간: 2023. 11. 6.(월) ~ 11. 10.(금)

2. 개정이유

-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안 제2조)
- 나.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사항을 반영(안 제2조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
- 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중복 해석되는 보훈단체를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정(안 제3조)

- 라. “애국지사”의 범위를 “희생·공헌자”로 개정하여 장례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안 제7조제2호)
- 마. 상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안 제7조의2제1항제4호)
- 바. 중단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차후 민원발생 억제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구민 중 희생·공헌자로서 대상이 됨에도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 규정 신설(안 제7조의4)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훈예우수당을 부당 혹은 잘못 지급했을 경우 이를 중지·환수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의 엄정성을 제고하며,
- 특히 2023년 10월 현재 생존하신 희생·공헌자 2,520분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을 통해 보훈예우의 의미를 높이고자 하는 것¹⁾으로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2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고 있어, 안 제3조에서 이에 대해 별도의 의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 안 제7조의2 중 “보훈예우수당”을 “수당”으로 약칭하는 것은 “보훈예우수당”에 담긴 보훈예우의 의미를 생략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이를 “보훈수당”으로 약칭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7조의4 중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상”은 관리대장의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이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2023년 10월 현재 달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650분임.

○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
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안 제7조2제2항 중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으로 한다)”으로 하고, 안 제3항 중 “수당”을 “보훈수당”으로 한다.

안 제7조3제1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 중 “수당”을 “보훈수당”으로 하고,
제2항 중 “수당”을 “보훈수당”으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수당”을 “보훈수당”
으로 한다.

안 제7조의4 중 “수당”을 “보훈수당”으로 하고,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
장”을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으로 한다.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 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u>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 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 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 훈단체”라 한다)로 한다.</u>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 ----- ----- ---- <u>보훈단체 및 국가 보훈부장관</u> ----- ----- ---- <u>단체</u> -----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u>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 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 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u>		
제7조의2(보훈예우수당 지 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u>보훈예 우수당</u> 지급액은 구청장 이 <u>따로 정한다.</u>	제7조의2(보훈예우수당 지 급) ① <생략>	② ----- <u>보훈예 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u> ----- ----- <u>정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u>보훈예우 수당(이하 “보훈수당”이 라 한다)</u> 지급액은 구청 장이 정한다.			
③ <u>제1항에 따른 보훈예</u>	③ <u>수당</u> -----	③ <u>보훈수당</u> 은 지급 대상					

우수당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 설>

제7조의3(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
 2.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7조의4(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의3(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
 2. 보훈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4(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5. 4·19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19혁명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